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945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9456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가단53245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란, 담당변호사 이선희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9. 12.

판결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가단53245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442,593,467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차례로 살펴본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10, 12, 16행의 각 “2,875만원”을 “2,785만 원”으로, 제6면 제9행의 “1,575만원(2,875만원 - 200만원 - 1,100만원)”을 “1,485만 원(= 2,785만 원 - 200만 원 - 1,100만 원)”으로, 제11면 제2행의 “1,575만원”을 “1,485만 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의 I 관련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I 관련 투자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기지급한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15행부터 제19행) 판단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I 관련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훈, 판사 오연수, 판사 김태홍

1)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1,575만원”을 “1,485만 원”으로 고치기는 하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15,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 주문은 그대로 유지한다.